

서울지방세무사회-세무정보(2023-01)

□ 1월의 세무일지

구 분	세 무 일 지
1월 10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2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기한 ▪ 원천징수분(반기납 포함) 법인세·소득세·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신고납부 ▪ 4대보험료 납부
1월 16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고용·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
1월 27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자 확정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
1월 31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2월 지급분 일용근로자(폐업자의 일용근로자 포함)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▪ 12월 지급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▪ 2022년 11월 폐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(일용근로 제외)

□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

가. 신고시 유의사항

- (1)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(일반과세 및 간이과세자 포함)는 모두 **2023년 1월 27일까지**(국세청 공고 제2022-75호 2일연장)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.
- (2) 2022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체과세기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. 간혹 예정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수정세금계산서가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시 발급되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(3)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시점에서 국세청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간혹 조회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지연발급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누락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(4) 매입세금계산서 중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내역 중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 특히, 비영업용승용차 구입, 임차 등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분으로 신고되어 추후 매입세액이 추징됨과 동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(5)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및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(기획재정부부가-538, 2014.09.05., 서면법령해석부가2019-1759, 2019.07.17.)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세금계산서를 회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예정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때 매월 10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연발급 또는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나. 납부기한등 연장등의 신청

- (1)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
-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
-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(喪中)인 경우
- ④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- (2)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의 [신청/제출]-[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]-[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(구.징수유예)]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

(1) 다음의 업종 사업자는 2023.1.1.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.

① 가전제품 수리업	⑩ 여자용 겹옷 제조업
②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	⑪ 남자용 겹옷 제조업
③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	⑫ 구두류 제조업
④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·요업제품 소매업	⑬ 시계·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
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	⑭ 가죽·가방 및 신발 수리업
⑥ 게임용구·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	⑮ 숙박공유업
⑦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	⑯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*
⑧ 행정사업	⑰ 기타 통신판매업*
⑨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(부품에 한정)	

*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

(2) (발급의무)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.

(3) (발급의무 위반 시)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,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,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%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.

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연혁

가.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)

발급의무 시작일	구분	업종
2010. 4. 1.	32개 업종 신규 지정	· 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, 변리사, 건축사, 법무사, 심판변론인,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, 감정평가사, 손해사정인, 통관업, 기술사업, 측량사업 · 종합병원, 일반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, 일반의원, 기타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수의업 · 일반교습학원, 예술학원,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, 골프장업, 장례식장, 예식장,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, 부동산 투자자문업
2010. 7. 1.	4개 업종 추가	· 공인노무사업, 일반유희주점, 무도유희주점, 산후조리원
2014. 1. 1.	12개 업종 추가	·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, 운전학원,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(교육목적),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, 피부미용업,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, 마사지업(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),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(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),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,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, 의류임대업, 포장이사 운송업

발급의무 시작일	구분	업종
2015. 6. 2.	4개 업종 추가	· 자동차 종합수리업, 자동차전문 수리업,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, 전세버스 운송업
2016. 7. 1.	6개 업종 추가	· 가구 소매업,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, 의료용 기구 소매업, 페인트·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,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·요업제품 소매업, 안경 및 렌즈 소매업
2017. 7. 1.	6개 업종 추가	· 출장음식서비스업,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, 기타 스포츠교육기관,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,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,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
2019. 1. 1.	5개 업종 추가	· 골프연습장 운영업,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, 악기 소매업,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,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
2020. 1. 1.	8개 업종 추가	· 가전제품 소매업,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,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, 컴퓨터학원,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, 체력단련시설 운영업, 묘지 분양 및 관리업, 장의차량 운영업
2021. 1. 1.	10개 업종 추가	· 전자상거래 소매업(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), 두발 미용업, 의복 소매업, 신발 소매업, 애완동물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, 통신기기 소매업, 컴퓨터 및 주변장치·소프트웨어 소매업, 독서실 운영업, 고시원 운영업, 철물·난방용구 소매업
2022. 1. 1.	8개 업종 추가	· 건강보조식품 소매업,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, 벽지·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, 중고가구 소매업, 공구 소매업,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, 자동차세차업, 모터사이클 수리업
2023. 1. 1.	17개 업종 추가	· 가전제품 수리업,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, 가정용 직물 제품 소매업,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·요업제품 소매업,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, 게임용구·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,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, 행정사업,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(부품 소매에 한정), 여자용 겔옷 제조업, 남자용 겔옷 제조업, 구두류 제조업, 시계·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, 가죽·가방 및 신발 수리업, 숙박 공유업,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(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), 기타 통신 판매업(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)

나.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연혁

시행일	내용
2010. 4. 1.	·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·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(한도: 건당 300만 원, 연간 1,500만 원) 신설
2014. 7. 1.	·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인하(30만 원 → 10만 원)
2014. 7. 1.	·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(건당 300만 원 → 100만 원, 연간 1,500만 원 → 500만 원)
2016. 1. 1.	·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(건당 100만 원 → 50만 원, 연간 500만 원 → 200만 원)
2019. 1. 1.	· 미발급 시 제제 완화 및 가산세 전환(50% 과태료 → 20% 가산세) 단, '18. 12. 31.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% 과태료 적용

□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

구 분	일반가맹점	의무발행가맹점
가입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비자 상대업종(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)을 영위하는 자로서 · 법인사업자 ·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무발행업종(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)을 영위하는 사업자 * 수입금액 기준 없음
발급 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 거부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10만원 이상)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- (10만원 미만) 일반가맹점과 동일
발급 의무 위반 시 제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발급거부가산세) 거부금액의 5% *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- (과태료)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 금액의 20% (2회 이상 위반 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10만원 미만) 일반가맹점과 동일 - (10만원 이상)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% 가산세 부과, 착오나 누락 등으로 10일 이내 발급 시 50% 감경
기타 제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가맹시 · (미가맹가산세)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% ·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 ·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,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가맹시: 일반가맹점과 동일

[감수 : 서울지방세무사회 오의식 연수이사]

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김 완 일 올림